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5737호 2013년 5월 30일(목)

경 상 북 도

■ 조 려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제3418호)	6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제3419호)	9
○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420호)	11

회								
람								

○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3421호)	18
○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3422호)	23
○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423호)	27
○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제3424호)	32
○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425호)	33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426호)	37
○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제3427호)	44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428호)	46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429호)	50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430호)	53

■ 규 칙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2743호)	55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제2744호)	76

■ 훈 령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420호)	80
--	----

■ 고 시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제2013-227호) 117
- 환지계획인가 고시(제2013-232호) 119
- 환지계획인가 고시(제2013-233호) 120
-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13-234호) 121
- 환지계획인가 고시(제2013-235호) 124
- 2013년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제2013-236호) 125
-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제2013-237호) 131
-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제2013-238호) 135

■ 공 고

-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제2013-642호) 137
- 측량업 등록 공고(제2013-643호) 138
- 전기공사업등록업체 행정처분 공고(제2013-644호) 139
- 전기공사업등록업체 행정처분 공고(제2013-645호) 140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합병 등록공고(제2013-646호) 141
-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합병 등록공고(제2013-647호) 142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제2013-650호) 143

시 군

■ 고 시

- 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김천시 고시 제2013-893호) 144
-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중2-136, 중2-1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13-68호) 173
- 구미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13-71호) 175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경산시 고시 제2013-47호) 177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의성군 고시 제2013-40호) 178
-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청송군 고시 제2013-29호) 181

■ 공 고

- 의성 군관리계획(문화시설)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의성군 공고 제2013-385호) 183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33호) 185

○ 하천점용허가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34호) 186



경 상 북 도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18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본운영”으로, 제2호 중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로 하고, 제3호 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본운영”으로, 제2호 중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로, 제3호 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로, 제4호 중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으로, 제5호 중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항”을 “구조·구급활동”으로, 제6호 중 “설치·운

영에 관한 사항”을 “설치·운영”으로, 제7호 중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소방교육·훈련”으로, 제8호 중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치·유지관리”로, 제9호 중 “홍보에 관한 사항”을 “홍보”로 하고, 제12호 중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을 “화재조사”로 한다.

제33조 중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해동로 376”을 “홍해읍 영일만향로 111-1”로 한다.

별표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포항북부소방서 관할구역란 “포항시 북구 일원, 영덕군 일원”을 “포항시 북구 일원”으로 하고, 의성소방서란 다음에 영덕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19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4,976명”을 “5,0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01명”을 “1,909명”으로, 제2호 중 “2,934명”을 “3,033명”으로 한다.

별표3 중 합계란 “4,976”을 “5,083”으로, 일반직 소계란 “1,446”을 “1,454”로, 일반직 3~4급 중 합계란 “1”을 “2”로, 본청란 “1”을 “2”로, 일반직 4급 중 합계란 “74”를 “73”으로, 본청란 “53”을 “52”로, 일반직 5급이하 합계란 “1,359”를 “1,367”로, 소방직 소계란 “2,934”를 “3,033”으로, 소방직 소방정 중 합계란 “19”를 “20”으로, 직속기관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0호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업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디자인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디자인”이란 지식 및 창조성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라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디자인전문기업”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

문화사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 사업
3.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사업
4. 디자인 교육 및 행사의 기획, 홍보, 실행에 관한 사업
5. 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의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연구기관
2. 디자인전문기업 집적시설
3. 산업디자인 전시장, 역사관, 박물관
4.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창업
5. 공용기기실

6. 디자인 정보센터
7. 산, 학, 연, 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8. 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심의, 조정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내용 중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
2. 산업디자인 등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

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본부장이 된다. 단, 위원중 여성은 30%이상으로 하고 외부 위원이 60%이상 되도록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 또는 상공업계의 인사 중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⑤ 위촉되는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디자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디자인담당 본부 ·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6조제2항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특화기관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지역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2. 디자인 전시사업
3. 디자인 교육·연수사업
4.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5. 디자인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영의 위탁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경상북도의 산업디자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

역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1호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쉼터”란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이하 “피해노인”이라 한다)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법 제39조의 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자원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
3. 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4.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5.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노인 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의 실시)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노인, 노인부양가족 및 일반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와 관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2호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보호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신 안정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와 안정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제5조(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 사업) ① 도지사는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2. 가정 및 학업 복귀를 위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3. 또래집단 및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훈련
 4.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5.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6. 그 밖에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계획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법」 제16조의 청소년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과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유형
3.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4.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의료복지에 관한 사항

5.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6.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또래집단 및 사회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법」 제9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구역과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환경 조성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도지사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경영자, 사업주 등 근로자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기관 금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및 비흡연자를 포함하여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금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북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도민들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상담·치료를 위하여 시·군 보건기관을 통한 상담·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흡연의 위험성 경고) 도지사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흡연 피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주민계몽

2.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범도민 금연운동

3. 금연정책 포럼 운영

제12조(평가) ①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심의)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창작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6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마.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
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사항” 으로 신설하고,
제7호 중 “기술제안 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을 “실시설계 기술제
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로 하고 제8호 중 “기술제안입찰” 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로,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을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 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⑧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호 중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로 하고

제2호 중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를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하고

제3호 중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를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로 하고

제4호 중 “그 밖에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로 한다.

제5호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제6호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7호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8호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⑧항 “도지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및 설계심의 분과 소위원회 명단을 기관에서 구성·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7조 제④항 중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를 “위촉한다.” 로 한다.

제27조 제①항 3호 중 “기술제안입찰” 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로, 4호 중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로 한다.

제29조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③항 “발주청장은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제②항과는 별도로 별표 2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0조 제①항 제1호 중 “설계평가회의 7일전” 을 “기술검토회의 2일전” 으로 하고, 제2호 중 “설계평가회의 7일전” 을 “기술검토회의 5일전” 으로 하고, 제3호 중 “설계평가회의 10일전” 을 “기술검토회의 5일전” 으로 하고, “설계

평가회의 개최당일”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일”로 하며 제④항 중 “입찰참가업체는 제③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 제①항 중 “금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을 “금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②항 중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선정 일부터 심의 일까지 입찰참가업체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를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

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로 하고,

제③항 중 “소위원장은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를 “발주청장은 제①항 및 제②항 규정을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④항** 중 “발주청장은 제21조제3호 자 목에 따른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②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⑤항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 제②항 중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를 “제30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

다.”로 한다.

제34조 제④항 중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제⑥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⑥항 “제27조 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심의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35조 제①항 1호 나목 중 “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를 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 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②항 중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한다.”로 하고, 같은 항 1호 나목 “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를 “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 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③항 중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별표 2] 심의관련 비리감점(제29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2년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7호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를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제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8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886명”을 “5,25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원”을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373명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율	2%이내	8.5%이내	33%이내	44%이내	12.5%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8%이내	20%이내	36%이내	36%이상

3.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	100%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9급 상당
비율	25%이내	—	75%이상	—

5. 교육전문직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이내	70%이상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합 계		5,259	-			
정 무 직		1	-			
일반직	소 계	2,530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2,504	-			
기능직	소 계	2,345	-			
	5급 이하	2,345	-			
연구직	소 계	6	-			
	연구사	6	-			
별정직	소 계	4	-			
	5급상당 이하	4	-			
교육전문직원	소 계	37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2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 이유

-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채정기준과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886명에서 5,259명으로 변경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373명을 신설함.(제2조)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에 교육전문직원을 신설하고, 장학관·연구관 및 장학사·연구사 비율을 정함.(별표 2)
-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추가함.
(별표 3)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9호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9인”을 “11명”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인”을 “7명”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자중에서 위촉한다.”를 “사람 중에서 위촉

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인” 을 “4명”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 를 “각 호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호의 5인” 을 “제1호의 7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호의 4인” 을 “제2호의 4명”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5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2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와” 를 “사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

중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로 한다.

제8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산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외부위원 위촉을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외부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을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2조)
- 위원회 간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변경(제6조)
- 기타 법제처 기준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30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의 평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평은로 537”을 “천상로 139”로 변경한다.

별표 2의 평은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평은로 537”을 “천상로 139”로 변경한다.

별표 3의 이동중학교 명칭란 중 “이동중학교”를 “포항이동중학교”로 변경한다.

별표 5의 상희학교란 다음에 경산자인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경산자인학교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56길 83

경 상 북 도

규 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규칙 제274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서기관” 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방호구조과” 를 “대응구조구급과”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방호구조과장” 을 “대응구조구급과장”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5호 중 “교육에 관한 사항” 을 “교육” 으로 하고, 제10호 중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을 “지도·지원”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방호구조과장” 을 “대응구조구급과장” 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제1호 중 “보안에 관한 사항” 을 “보안” 으로, 제2호 중 “평정에 관한 사항” 을 “평정” 으로, 제4호 중 “징계에 관한 사항” 을 “징계” 로, 제5호 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을 “교육훈련” 으로, 제6호 중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을 “후생복지” 로, 제7호 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관리운영” 으로, 제8호 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관리운영” 으로, 제9호 중 “결산에 관한 사항” 을 “결산” 으로, 제10호 중 “출납에 관한 사항” 을 “출납” 으로 하고, 제11호 중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을 “유지보수” 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대응구조과” 를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 및 대응구조구급과” 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고령·성주·칠곡·울진소방서의 대응구조과장” 을 “의성·영덕·고령·성주·칠곡·울진소방서의 대응구조구급과

장” 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제1호 중 “소방 조직운영 및 소방력에 관한 사항” 을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 으로, 제2호 중 “평정에 관한사항” 을 “평정” 으로, 제3호 중 “징계에 관한 사항” 을 “징계” 로, 제4호 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을 “교육훈련” 으로, 제5호 중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을 “후생복지” 로, 제6호 중 “보안에 관한 사항” 을 “보안” 으로, 제7호 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관리운영” 으로, 제8호 중 “결산에 관한 사항” 을 “결산” 으로, 제9호 중 “출납에 관한 사항” 을 “출납” 으로, 제10호 중 “공유재산관리 및 소방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을 “공유재산 및 소방장비 관리” 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방호예방과장” 을 “예방안전과장” 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제1호 중 “소방업무” 를 “예방업무” 로,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을 “수립·시행” 으로, 제2호 중 “예방·경계에 관한 사항” 을 “예방” 으로, 제4호 중 “학생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학생 등의 교육” 으로, 제6호 중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을 “세입징수” 로, 제7호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을 “안전관리” 로, 제8호 중 “방염 등에 관한 사항” 을 “방염 등” 으로, 제9호 및 제10호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을 “안전관리” 로, 제11호 중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을 “손실보상” 으로, 제12호 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로 하고,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5항 중 “대응구조과장”을 “대응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제1호부터 제12호를 각각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로, 제2호 중 “현장활동에 관한 사항”을 “현장활동”으로, 제5호 중 “소방 훈련에 관한 사항”을 “소방훈련”으로, 제7호 중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리조사”로, 제8호 중 “단속에 관한 사항”을 “단속”으로, 제9호 중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을 “화재조사”로, 제10호 중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을 “자료조사”로, 제11호 중 “119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을 “119구조·구급”으로, 제12호 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치·운영”으로, 제13호 중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제14호 중 “응원에 관한 사항”을 “응원”으로, 제15호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으로, 제16호 중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보안”으로 하고,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응·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화재의 경계
4.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6.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제3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로, 제3호 중 “작성에 관한 사항”을 “작성”으로, 제4호 중 “소독에 관한 사항”을 “소독”으로, 제5호 중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화재·구조·구급 증명서 발급”으로, 제6호 중 “재난예방순찰에 관한 사항”을 “재난예방순찰”로, 제7호 중 “동원에 관한 사항”을 “동원”으로, 제8호 중 “대민홍보에 관한 사항”을 “대민홍보”로, 제9호 중 “경계근무에 관한 사항”을 “경계근무”로, 제10호 및 제11호 중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소방교육·훈련”으로, 제12호 중 “소방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을 “소방정보수집”으로, 제13호 중 “완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완비촉진”으로, 제14호 및 제15호 중 “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사”로, 제16호 중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점검”으로, 제17호 중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제18호 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제19호 중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집행”으로, 제20호 중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을 “초기대응”으로, 제21호 중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을 “소방훈련”으로, 제22호 중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리조사”로, 제23호 중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을 “자료조사”로, 제24호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으로 하고, 제25호 중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보안”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구조대의 설치)”를 “(119구조대의 설치)”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구조대” 를 “119구조대” 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구조대” 를 “119구조대” 로 하고, “구조대장” 을 “119구조대장” 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구조대장” 을 “119구조대장” 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제1호 중 “구조·구급활동일지” 를 “구조활동일지” 로, “작성에 관한 사항” 을 “작성” 으로, 제3호 중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을 “구조증명서 발급” 으로, 제4호 중 “재난예방순찰에 관한 사항” 을 “재난예방순찰” 로, 제5호 중 “동원에 관한 사항” 을 “동원” 으로, 제6호 중 “대민홍보에 관한 사항” 을 “대민홍보” 로, 제7호 중 “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을 “경계근무” 로, 제8호 및 제9호 중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을 “소방교육·훈련” 으로, 제10호 중 “소방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을 “소방정보수집” 으로, 제11호 중 “구조·구급활동” 을 “구조활동” 으로, “조사에 관한 사항” 을 “조사” 로, 제12호 중 “점검에 관한 사항” 을 “점검” 으로, 제13호 중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을 “소방지원활동” 으로, 제14호 중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운용” 으로, 제15호 중 “집행에 관한 사항” 을 “집행” 으로, 제16호 중 “구조·구급활동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을 “구조활동 초기대응” 으로, 제17호 중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을 “지리조사” 로, 제18호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으로, 제19호 중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보안”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119구조구급센터의 설치) ①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4]와 같다.

② 119구조구급센터에 119구조구급센터장을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③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119구조구급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구조·구급활동일지 등의 작성
2. 구급차 등의 소독
3.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4. 화재 및 재난예방순찰
5. 소방공무원의 동원
6.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7. 경계근무
8. 외근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훈련

9.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10. 소방정보수집
11.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12.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
13. 소방지원활동
14. 소방장비의 운용
15. 도급경비 집행
16. 화재 현장활동 대응 및 구조·구급활동 초기대응
17. 지리조사
18.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
19. 정보통신보안

제44조 중 “별표4”를 “별표5”로 한다.

제48조 중 “별표5”를 “별표6”으로 한다.

제56조 중 “별표6”을 “별표7”로 한다.

제60조 중 “별표7”을 “별표8”로 한다.

제72조 중 “별표8”을 “별표9”로 한다.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2】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센터장직급 및 관할구역 (제38조제1항 관련)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포항북부 소 방 서	덕 산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지방소방경	포항시 대흥동, 신흥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덕산동, 덕수동, 동빈로1가, 동빈로2가, 용흥동, 대흥동, 죽도동, 득양동, 학잠동,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 일원
	두 호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305	지방소방위	포항시 두호동, 우현동, 창포동, 항구동, 학산동, 대신동 일원
	홍 해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홍해읍 중성로 67	지방소방위	포항시 홍해읍, 신평면, 청하면, 송라면 일원
	장 량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0	지방소방위	포항시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일원
포항남부 소 방 서	일 월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지방소방경	포항시 청림동, 일월동, 인덕동, 동촌동, 송정동, 송내동, 동해면 일원
	제 철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철강로 360	지방소방위	포항시 괴 동, 장흥동, 호 동, 대송면, 연일읍, 생지리, 괴정리, 동문리, 오천리, 중명리, 중단리, 택전리, 인주리, 우복리 일원
	해 도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8	지방소방위	포항시 상도동, 해도동, 송도동, 대도동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효 자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지곡로 212-45	지방소방위	포항시 효자동, 지곡동, 대잠동, 이 동, 연일읍, 유강리, 자명리, 학전리, 달전리 일원
	구룡포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65	지방소방위	포항시 구룡포읍, 대보면 일원
	오 천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369	지방소방위	포항시 오천읍, 장기면 일원
	울 릅 119안전센터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415	지방소방경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황 오 119안전센터	경주시 알천남로 276	지방소방경	경주시 황오동, 성동동, 동천동, 구황동, 배반동, 인왕동, 교 동, 동방동, 남산동, 내남면 일원
	동 부 119안전센터	경주시 중앙로 59	지방소방위	경주시 동부동, 서부동, 북부동, 석장동, 노동동, 노서동, 성건동, 사정동, 탑정동, 충효동, 서악동, 효현동, 광명동, 황남동, 울 동, 배 동 일원
	보 문 119안전센터	경주시 경감로 587-8	지방소방위	경주시 천군동, 암곡동, 손곡동, 북군동, 황용동, 덕동동, 보문동, 신평동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불국사 119안전센터	경주시 불국신태지 4길 4	지방소방위	경주시 진현동, 마 동, 하 동, 구정동, 조양동, 도지동, 사례동, 서동, 평동 일원
	용 황 119안전센터	경주시 공단로 25	지방소방위	경주시 용강동, 황성동, 천북면, 현곡면 일원
	안 강 119안전센터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6	지방소방위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 일원
	외 동 119안전센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1길 78-15	지방소방위	경주시 외동읍 일원
	감 포 119안전센터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8길 14-6	지방소방위	경주시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일원
	건 천 119안전센터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65	지방소방위	경주시 건천읍, 산내면, 서면 일원
김천소방서	지 좌 119안전센터	김천시 황산로 67	지방소방경	김천시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지좌동, 덕곡동, 양천동, 농소면, 감천면 일원
	다 수 119안전센터	김천시 영남대로 1246	지방소방위	김천시 부곡동, 다수동, 백옥동, 교 동, 삼락동, 문당동, 대항면, 봉산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대 광 119안전센터	김천시 공단로 152-36	지방소방위	김천시 신음동, 대광동, 응명동, 어모면, 개령면 일원
	지 레 119안전센터	김천시 지례면 장터길 115	지방소방위	김천시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일원
	아 포 119안전센터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45	지방소방위	김천시 아포읍, 남면, 감문면 일원
안동소방서	범 흥 119안전센터	안동시 육사로 301	지방소방경	안동시 일원 (제;용상동, 성곡동, 석동동, 송천동, 임동면, 임하면, 길안면, 남선면, 풍산읍, 풍천면, 서후면)
	용 상 119안전센터	안동시 마들6길 27	지방소방위	안동시 용상동, 성곡동, 석동동, 송천동, 임동면, 임하면, 길안면, 남선면 일원
	풍 산 119안전센터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2	지방소방위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서후면 일원
	청 송 119안전센터	청송군 청송읍 길안청송로 1630	지방소방경	청송군 일원 (제;진보면, 파천면)
	진 보 119안전센터	청송군 진보면 청송로 6346	지방소방위	청송군 진보면, 파천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영 양 119안전센터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42-14	지방소방경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일원
	입 암 119안전센터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153	지방소방위	영양군 입암면, 석보면, 청기면 일원
구미소방서	공 단 119안전센터	구미시 수출대로 112	지방소방경	구미시 공단동, 신평동, 비산동 일원
	송 정 119안전센터	구미시 송원동로 10	지방소방위	구미시 송정동, 남통동, 형곡동 일원
	원 평 119안전센터	구미시 산업로 174	지방소방위	구미시 원평동, 도량동, 지산동, 봉곡동, 부곡동, 선기동, 수점동 일원, 양호동(591-1 ~ 591-398번지) 일부
	인 동 119안전센터	구미시 이계북로 147	지방소방위	구미시 인의동, 황상동, 신 동, 구평동, 진평동, 시미동, 임수동 일원
	선 산 119안전센터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400-13	지방소방위	구미시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일원
	해 평 119안전센터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63	지방소방위	구미시 해평면, 도개면, 장천면, 산동면(제:봉산리)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상 립 119안전센터	구미시 상림로 45	지방소방위	구미시 상모동, 사곡동, 임은동, 오태동, 광평동 일원
	옥 계 119안전센터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 41길 4	지방소방위	구미시 옥계동, 구포동, 금전동, 거의동, 양호동(제:591-1 ~ 591-398 번지) 일부, 산동면(봉산리) 일부
	고 아 119안전센터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821	지방소방위	구미시 고아읍 일원
영주소방서	문 수 119안전센터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448번 길 17	지방소방경	영주시 휴천동, 조암동, 적서동, 문정동, 문수면, 평은면, 이산면 일원, 가흥동 일부(가흥1동)
	가 흥 119안전센터	영주시 선비로 181	지방소방위	영주시 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가흥2동, 장수면, 안정면 일원
	풍 기 119안전센터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159	지방소방위	영주시 풍기읍,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일원
	봉 화 119안전센터	봉화군 봉화읍 문수로 42	지방소방경	봉화군 봉화읍, 물야면, 상운면 일원
	춘 양 119안전센터	봉화군 춘양읍 소천로 22	지방소방위	봉화군 춘양면,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일원
	명 호 119안전센터	봉화군 명호면 도천길 18-46	지방소방위	봉화군 명호면, 재산면, 봉성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영천소방서	동 부 119안전센터	영천시 호국로 187	지방소방경	영천시 일원 (제;금호읍, 대창면,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일원)
	금 호 119안전센터	영천시 금호읍 오계공단길 5	지방소방위	영천시 금호읍, 대창면 일원
	신 녕 119안전센터	영천시 신녕면 어릿골길 11	지방소방위	영천시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일원
상주소방서	서 성 119안전센터	상주시 상산로 322	지방소방경	상주시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사벌면, 중동면, 내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 일원
	함 창 119안전센터	상주시 함창읍 가야로 46-1	지방소방위	상주시 함창읍,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일원
	청 리 119안전센터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152	지방소방위	상주시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모동면, 모서면 일원
문경소방서	점 촌 119안전센터	문경시 중앙로 305	지방소방경	문경시 일원 (제;문경읍, 가은읍, 농암면, 마성면, 동로면 일원)
	가 은 119안전센터	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26	지방소방위	문경시 가은읍, 농암면 일원
	문 경 119안전센터	문경시 문경읍 새제로 501	지방소방위	문경시 문경읍, 마성면, 동로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예 천 119안전센터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지방소방경	예천군 예천읍, 감천면, 보문면, 상리면, 하리면, 용문면 일원
	지 보 119안전센터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247	지방소방위	예천군 지보면, 풍양면, 호명면, 개포면, 용궁면, 유천면 일원
경산소방서	조 영 119안전센터	경산시 대학로 316	지방소방경	경산시 대정동, 임당동, 대평동, 조영동, 갑제동, 대 동, 사 동, 내 동, 계양동, 삼풍동, 여천동, 남방동, 신천동, 점촌동, 유곡동, 평산동, 압량면 일원
	중 앙 119안전센터	경산시 장산로 143	지방소방위	경산시 중산동, 정평동, 삼남동, 서상동, 신교동, 상방동, 백천동, 삼북동, 옥곡동, 중방동, 사정동, 옥산동, 남천면 일원
	하 양 119안전센터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93	지방소방위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
	진 량 119안전센터	경산시 진량면 공단2로 72	지방소방위	경산시 진량읍 일원
	청 도 119안전센터	청도군 화양읍 범곡길 11	지방소방경	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일원
	자 인 119안전센터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25-11	지방소방위	경산시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일원
	풍 각 119안전센터	청도군 풍각면 송서로 64	지방소방위	청도군 각남면, 각북면, 풍각면, 이서면 일원
	금 천 119안전센터	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363	지방소방위	청도군 금천면, 운문면, 매전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의성소방서	봉 양 119안전센터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지방소방경	의성군 봉양면, 안평면, 신평면, 비안면,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일원
	의 성 119안전센터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87	지방소방위	의성군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일원
	안 계 119안전센터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00	지방소방위	의성군 안계면, 안사면, 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구천면 일원
	군 위 119안전센터	군위군 군위읍 공단길 65	지방소방경	군위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일원
	의 흥 119안전센터	군위군 의흥면 읍내길 23	지방소방위	군위군 의흥면, 우보면, 부계면, 고로면, 산성면 일원
영덕소방서	영 덕 119안전센터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지방소방경	영덕군 영덕읍, 달산면, 지품면 일원
	강 구 119안전센터	영덕군 강구면 강산로 38	지방소방위	영덕군 강구면, 남정면 일원
	영 해 119안전센터	영덕군 영해면 창수영해로 481	지방소방위	영덕군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축산면 일원
고령소방서	고 령 119안전센터	고령군 고령읍 벽화길 18	지방소방경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 주 119안전센터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지방소방경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왜 관 119안전센터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지방소방경	칠곡군 왜관읍 일부(금산리· 금남리·삼청리·낙산리 제외), 기산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북 삼 119안전센터	칠곡군 북삼읍 안산2길 46	지방소방위	칠곡군 북삼읍, 약목면, 석적읍 일원
	금 산 119안전센터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94	지방소방위	칠곡군 왜관읍 일부(금산리· 금남리·삼청리·낙산리), 지천면 일원
	가 산 119안전센터	칠곡군 가산면 다부원1길 57	지방소방위	칠곡군 가산면, 동명면 일원
울진소방서	울 진 119안전센터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지방소방경	울진군 울진읍, 서 면, 근남면, 원남면 일원
	온 정 119안전센터	울진군 온정면 백암온천로 1315	지방소방위	울진군 온정면 일원
	죽 변 119안전센터	울진군 죽변면 하죽로 1841	지방소방위	울진군 죽변면, 북 면 일원
	후 포 119안전센터	울진군 후포면 실배길 28-1	지방소방위	울진군 후포면, 평해읍, 기성면 일원

【별표3】

119구조대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9조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안동소방서 수난119구조대	안동시 석주로 497	안동호 일원

【별표4】

119구조구급센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9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경주시 알천남로 276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김천시 황산로 67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안동시 육사로 301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영천시 호국로 187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상주시 상산로 322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시 일원
문경소방서 예천119구조구급센터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예천군 일원
경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경산시 대학로 316	경산시 일원
경산소방서 청도119구조구급센터	청도군 화양읍 범곡길 11	청도군 일원
의성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영덕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고령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고령군 고령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칠곡군 일원
울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군 일원

【별표5】

농업자원관리원 분원 위치(제44조 관련)

시 험 장 명 칭	위 치	비 고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단북다인로 434-17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무운로 1621-27	

【별표9】

어업기술센터와 각 지소 위치 및 관할구역 (제72조 관련)〈신설 ’ 09.4.23〉

구 분	위 치	관 할 구 역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영일만항로 111-1	포항·경주·김천·구미·영천·경산시, 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군 (11개 시군)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476-3	안동·영주·상주·문경시, 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 봉화·울진군(11개 시군)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77	울릉군(1개 시군)

“1,307” 로, 직속기관란 “3,155” 를 “3,244” 로, 사업소란 “424” 를
 “426” 으로, 소방직 계 중 합계란 “2,934” 를 “3,033” 으로, 본청란
 “140” 을 “150” 으로, 직속기관란 “2,794” 를 “2,883” 으로, 소방정 중 합
 계란 “19” 를 “20” 으로, 직속기관란 “16” 을 “17” 로, 소방령 중 합계란
 “53” 을 “60” 으로, 직속기관란 “40” 을 “47” 로, 소방경 중 합계란
 “144” 를 “165” 로, 본청란 “17” 을 “18” 로, 직속기관란 “127” 을
 “147” 로, 소방위 중 합계란 “231” 을 “241” 로, 본청란 “20” 을 “22” 로,
 직속기관란 “211” 을 “219” 로, 소방장 중 합계란 “437” 을 “454” 로, 본청
 란 “36” 을 “37” 로, 직속기관란 “401” 을 “417” 로, 소방교 중 합계란
 “763” 을 “775” 로 직속기관란 “743” 을 “755” 로, 소방사 중 합계란
 “1,286” 을 “1,317” 로, 본청란 “30” 을 “36” 으로, 직속기관란 “1,256”
 을 “1,281” 로, 일반직 계 중 합계란 “1,446” 을 “1,454” 로, 본청란
 “1,028” 을 “1,034” 로, 사업소란 “276” 을 “278” 로, 3~4급 소계 중 합계
 란 “1” 을 “2” 로, 본청란 “1” 을 “2” 로, 3~4급 행정 중 합계란 “1” 을
 “2” 로, 본청란 “1” 을 “2” 로, 4급 소계 중 합계란 “74” 를 “73” 으로,
 본청란 “53” 을 “52” 로, 4급 행정 중 합계란 “24” 를 “23” 으로, 본청란
 “18” 을 “17” 로, 5급 소계 중 합계란 “299” 를 “300” 으로, 본청란
 “245” 를 “246” 으로, 5급 행정 중 합계란 “141” 을 “142” 로, 본청란
 “117” 을 “118” 로, 6급 소계 중 합계란 “500” 을 “504” 로, 본청란
 “361” 을 “363” 으로, 사업소란 “95” 를 “97” 로, 6급 행정 중 합계란
 “200” 을 “201” 로, 본청란 “148” 을 “149” 로, 6급 공업 중 합계란 “11”

을 “12” 로, 본청란 “10” 을 “11” 로, 6급 수의 중 본청란 “2” 를 “1” 로, 사업소란 “18” 을 “19” 로, 6급 공업·시설 중 본청란 “0” 을 “1” 로, 사업소란 “1” 을 “0” 으로, 6급 수의·수의연구사 중 합계란 “5” 를 “7” 로, 사업소란 “4” 를 “6” 으로, 7급 소계 중 합계란 “465” 를 “468” 로, 본청란 “317” 을 “320” 으로, 7급 공업 중 합계란 “12” 를 “11” 로, 본청란 “9” 를 “8” 로, 7급 수의 중 본청란 “1” 을 “2” 로, 사업소란 “28” 을 “27” 로, 7급 시설 중 합계란 “66” 을 “68” 로, 본청란 “46” 을 “48” 로, 7급 행정·학예연구사 중 합계란 “1” 을 “2” 로, 본청란 “1” 을 “2” 로 하고, 7급 공업·환경란 다음에 공업·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업·시설	1				1	
-------	---	--	--	--	---	--

별표2 한시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민생경제교통과 중 존속기한란 “2013.6.30” 을 “2013.12.31”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가. 자치법규 영향력 확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증가 등에 따른 법적 대응력 강화, 회계비리 방지, 산업단지 조성·관리기능 강화, 지적재조사 등 디지털 토지관리 체계 구축,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등 호국의 메카 조성, 식육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축검사 기능강화 및 소방서 신설에 따른 필요한 인력 확충

나. 관련법령 개정예 따라 감사관 직급을 조정하고, 물가관리 전담인력의 한시기한 연장

경 상 북 도

평
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영향력 확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증가 등에 따른 법적 대응력 강화, 회계비리 방지, 산업단지 조성·관리기능 강화, 지적재조사 등 디지털 토지관리체계 구축,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등 호국의 메카 조성, 식육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축검사 기능강화 및 소방서 신설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 법령개정에 따라 감사관 직급을 조정하고, 가축질병관리 강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일과 성과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1) 道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5,083명(增107명)

2) 부서별 정원조정

[감사관] +1

○ 3·4급 +1, 행정4급 △1, 행정7급 +1

※ 법령 개정에 따른 감사관 직급 조정 및 회계비리 방지대책 강화

[기획조정실] +1

○ 행정5급 +1

※ 자치입법 지원 및 법적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 채용

[문화관광체육국]

○ 행정7급 △1, 행정7급·학예연구사 +1

※ 우수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관리기능 보강

[농수산국]

○ 수의6급 △1, 수의7급 +1

※ 가축질병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환경해양산림국]

○ 행정6급 △1, 행정·녹지6급 +1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조정

[보건복지국] +1

○ 공업·시설6급 +1

※ 낙동강 호국 평화벨트 등 호국의메카 조성 기능 강화

[건설도시방재국] +3

○ 행정6급 +2, 공업6급 +1, 행정·녹지6급 △1, 시설7급 +2, 공업·방송통신7급 △1

※ 지적재조사, 산업단지 조성·관리 기능보강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재배치

[행정지원국]

○ 공업7급 △1, 공업·방송통신7급 +1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소방본부] +10

- 소방경 +1, 소방위 +2, 소방장 +1, 소방사 +6

※ 119특수구조단, 이동안전체험업무 및 119종합정비센터 인력보강

[소방관서] +89

- 소방학교 : 소방사 +1

포항북부소방서 : 소방경 △1, 소방위 △2, 소방장 △9,

소방교 △15, 소방사 △22

포항남부소방서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사 +1

경주소방서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교 +2, 소방사 △9

김천소방서 :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3, 소방사 △6

안동소방서 : 소방위 +2, 소방장 +2, 소방교 +5, 소방사 +3

구미소방서 : 소방위 +2, 소방장 +2, 소방교 +5, 소방사 +3

영주소방서 :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3, 소방장 △1,

소방교 +2, 소방사 △6

영천소방서 :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3, 소방사 △3

상주소방서 :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2, 소방장 +3,

소방사 +1

문경소방서 :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3, 소방교 △1,

소방사 △2

경산소방서 : 소방위 +2, 소방장 +2

의성소방서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교 △2, 소방사 +4

영덕소방서 : 소방정 +1, 소방령 +2, 소방경 +6, 소방위 +11,

소방장 +22, 소방교 +24, 소방사 +45

고령소방서 : 소방위 +1, 소방교 △3, 소방사 +4

성주소방서 : 소방위 +1, 소방교 △3, 소방사 +5

칠곡소방서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사 +2

울진소방서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교 △2, 소방사 +4

※ 소방학교 교관 및 영덕소방서·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

[가축위생시험소(본소)] +1

○ 수의6·수의연구사 +2, 수의7급 △1

※ 식육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축검사 및 가축질병관리 기능보강

[산림자원개발원] +1

○ 수의6급 +1, 공업·시설6급 △1, 공업·시설7급 +1

※ 야생동물구조 기능보강 및 성과중심의 인력 재배치

3) 계약직 조정

○ 계약직 총정원 : 79명 → 80명(增1명)

• 계약직 신규지정

－ 법무통계담당관 +1 (행정5급)

※ 자치입법 지원 및 법적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 채용

• 개방형직위 직급 조정

－ 감사관 : (현행)행정4급 △1 → (조정)3·4급 +1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사관 직급조정

나. 분장사무 조정

1) 명칭변경

- 소방본부 : 방호구조과 → 대응구조구급과

※ 예방·구조구급 분야 기능 강화

- 소방서

－ 방호예방과 → 예방안전과

－ 대응구조과 → 대응구조구급과

※ 예방업무 및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능조정

2) 소방서 신설 및 부서 기능조정에 따른 업무이관

- (신설) 영덕소방서

－ 소방조직 운영, 화재 예방·경계,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현장 활동 등

- (기능조정) 기능조정에 따른 업무 이관

－ (소방대원교육)

－ (의용소방대 운영)

예방안전과 → 대응구조구급과

3. 개정안 : 별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4조

경상북도 훈령 제1420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4조제1항 중 “본청 119종합상황실은 「팀제」로 운영하며, 팀제를 운영하지 않는
본청의”를 “본청의”로 하고, “운영한다”를 “운영하며, 과·담당관은 팀으
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본청·의회사무처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과장·팀장 및 담당관”을 “본
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별표1 중 총계란 “1,291”을 “1,307”로, 소방직 계란 “140”을 “150”으로,

지방소방경란 “17” 을 “18” 로, 지방소방위란 “20” 를 “22” 로, 지방소방장란 “36” 을 “37” 으로, 지방소방사란 “30” 을 “36” 으로, 1급 내지 9급 계란 “1,028” 을 “1,034” 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란 “1” 을 “2” 로, 지방서기관란 “18” 을 “17” 로, 지방행정사무관란 “117” 을 “118” 로, 지방행정주사란 “148” 을 “149” 로, 지방공업주사란 “10” 을 “11” 로, 지방수의주사란 “2” 를 “1” 로, 지방공업주사보란 “9” 를 “8” 로, 지방수의주사보란 “1” 을 “2” 로, 지방시설주사보란 “46” 을 “48” 로,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학예연구사란 “1” 을 “2” 로 하고,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란 다음에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별표1의3 중 소계란 “37” 을 “38” 로, 1급 내지 9급 계란 “33” 을 “34” 로, 지방행정주사보란 “5” 를 “6” 으로, 지방서기관란을 삭제하고, 1급 내지 9급 계란 다음에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1

별표1의6 중 소계란 “99” 를 “100” 으로, 1급 내지 9급 계란 “95” 를 “96” 으로 하고, 지방행정사무관란 “16” 을 “17” 로 한다.

별표1의9 중 지방행정주사보란 “16” 을 “15” 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

시설주사보란 다음에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학예연구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학예연구사 1

별표1의10 중 지방수의주사란 “2” 를 “1” 로 하고, 지방수의주사보란 “1” 을 “2” 로 한다.

별표1의11 중 지방행정주사란 “9” 를 “8” 로 하고,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란 “1” 을 “2” 로 한다.

별표1의12 중 소계란 “83” 을 “84” 로, 1급 내지 9급 계란 “77” 을 “78” 로 하고,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란 다음에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별표1의13 중 소계란 “122” 를 “125” 로, 1급 내지 9급 계란 “117” 을 “120” 으로, 지방행정주사란 “10” 을 “12” 로, 지방공업주사란 “1” 을 “2” 로, 지방시설주사보란 “22” 를 “24” 로 하고,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란 및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보란을 삭제한다.

별표1의15 중 공업주사보란 “4” 를 “3” 으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시

설주사보란 다음에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보 1

별표1의16 중 소계란 “140” 을 “150” 으로, 소방직 계란 “137” 을 “147” 로 지방소방정란 “17” 을 “18” 로, 지방소방위란 “19” 를 “21” 로, 지방소방장란 “34” 를 “35”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30” 을 “36” 으로 한다.

별표3 중 총계란 “3,155” 를 “3,244” 로, 소방직 계란 “2,794” 를 “2,883” 으로, 지방소방정란 “16” 을 “17” 로, 지방소방령란 “40” 을 “47” 로, 지방소방정란 “127” 을 “147” 로, 지방소방위란 “211” 을 “219” 로, 지방소방장란 “401” 을 “417” 로, 지방소방교란 “743” 을 “755”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1,256” 을 “1,281” 로 한다.

별표3의5 중 소계란 “2,800” 을 “2,889” 로, 소방직 계란 “2,794” 를 “2,883” 으로, 지방소방정란 “16” 을 “17” 로, 지방소방령란 “40” 을 “47” 로, 지방소방정란 “127” 을 “147” 로, 지방소방위란 “211” 을 “219” 로, 지방소방장란 “401” 을 “417” 로, 지방소방교란 “743” 을 “755”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1,256” 을 “1,281” 로 한다.

별표3의5의2 중 소계란 “32” 를 “33” 으로, 소방직 계란 “26” 을 “27” 로 하

고, 지방소방사란 “1” 을 “2” 로 한다.

별표3의5의3 중 소계란 “201” 을 “152” 로, 소방직 계란 “201” 을 “152” 로, 지방소방경란 “10” 을 “9” 로, 지방소방위란 “14” 를 “12” 로, 지방소방장란 “34” 를 “25” 로, 지방소방교란 “53” 을 “38”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86” 을 “64” 로 한다.

별표3의5의4 중 소계란 “204” 를 “205” 로, 소방직 계란 “204” 를 “205” 로, 지방소방위란 “12” 를 “13” 으로, 지방소방장란 “29” 를 “28”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98” 을 “99” 로 한다.

별표3의5의5 중 소계란 “248” 을 “241” 로, 소방직 계란 “248” 을 “241” 로, 지방소방위란 “16” 을 “17” 로, 지방소방장란 “37” 을 “36” 으로, 지방소방교란 “65” 를 “67”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117” 을 “108” 로 한다.

별표3의5의6 중 소계란 “151” 을 “146” 으로, 소방직 계란 “151” 을 “146” 으로, 지방소방령란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란 “6” 을 “9” 로, 지방소방위란 “13” 을 “10” 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70” 을 “64” 로 한다.

별표3의5의7 중 소계란 “237” 을 “249” 로, 소방직 계란 “237” 을 “249” 로, 지방소방위란 “15” 를 “17” 로, 지방소방장란 “33” 을 “35” 로, 지방소방교

란 “71” 을 “76” 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103” 을 “106” 으로 한다.

별표3의5의8 중 소계란 “218” 을 “230” 으로, 소방직 계란 “218” 을 “230” 으로, 지방소방위란 “15” 를 “17” 로, 지방소방장란 “37” 을 “39” 로, 지방소방교란 “61” 을 “66” 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92” 를 “95” 로 한다.

별표3의5의9 중 소계란 “191” 을 “187” 로, 소방직 계란 “191” 을 “187” 로, 지방소방령란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란 “7” 을 “10” 으로, 지방소방위란 “14” 를 “11” 로, 지방소방장란 “25” 를 “24” 로, 지방소방교란 “47” 을 “49”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95” 를 “89” 로 한다.

별표3의5의10 중 소계란 “131” 을 “129” 로, 소방직 계란 “131” 을 “129” 로, 지방소방령란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란 “6” 을 “9” 로, 지방소방위란 “11” 을 “8”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59” 를 “56” 으로 한다.

별표3의5의11 중 소계란 “141” 을 “147” 로, 소방직 계란 “141” 을 “147” 로, 지방소방령란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란 “6” 을 “9” 로, 지방소방위 “10” 을 “8” 로, 지방소방장란 “12” 를 “15”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73” 을 “74” 로 한다.

별표3의5의12 중 소계란 “191” 을 “189” 로, 소방직 계란 “191” 을 “189” 로,

지방소방령란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란 “7” 을 “10” 으로, 지방소방위란 “14” 를 “11” 로, 지방소방교란 “52” 를 “51”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90” 을 “88” 로 한다.

별표3의5의13 중 소계란 “218” 을 “222” 로, 소방직 계란 “218” 을 “222” 로, 지방소방위란 “15” 를 “17” 로 하고, 지방소방장란 “35” 를 “37” 로 한다.

별표3의5의14 중 소계란 “166” 을 “168” 로, 소방직 계란 “166” 을 “168” 로, 지방소방위란 “13” 을 “14” 로, 지방소방장란 “24” 를 “23” 으로, 지방소방교란 “50” 을 “48”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69” 를 “73” 으로 한다.

별표3의5의14의2 영덕소방서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의5의14의2] 영덕소방서 정원표	
소 계	111
소방직 계	111
지방소방정	1
지방소방령	2
지방소방경	6
지방소방위	11
지방소방장	22
지방소방교	24
지방소방사	45

별표3의5의15 중 소계란 “89”를 “91”로, 소방직 계란 “89”를 “91”로, 지방소방위란 “8”을 “9”로, 지방소방교란 “24”를 “21”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34”를 “38”로 한다.

별표3의5의16 중 소계란 “98”을 “101”로, 소방직 계란 “98”을 “101”로, 지방소방위란 “9”를 “10”으로, 지방소방교란 “29”를 “26”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43”을 “48”로 한다.

별표3의5의17 중 소계란 “147”을 “149”로, 소방직 계란 “147”을 “149”로, 지방소방위란 “12”를 “13”으로, 지방소방장란 “21”을 “20”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66”을 “68”로 한다.

별표3의5의18 중 소계란 “137”을 “139”로, 소방직 계란 “137”을 “139”로, 지방소방위란 “12”를 “13”으로, 지방소방장란 “22”를 “21”로, 지방소방교란 “32”를 “30”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62”를 “66”으로 한다.

별표4 중 총계란 “424”를 “426”으로, 1급 내지 9급 계란 “276”을 “278”로, 지방수의주사란 “18”을 “19”로,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란 “4”를 “6”으로, 지방수의주사보란 “28”을 “27”로,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란을 삭제하고,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란 다음에 지

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별표4의3 중 소계란 “84” 를 “85” 로, 1급 내지 9급 계란 “69” 를 “70” 으로,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란 “4” 를 “6” 으로 하고, 지방수의주사보
란 “27” 을 “26” 으로 한다.

별표4의3의2 중 소계란 “36” 을 “37” 로, 1급 내지 9급 계란 “30” 을 “31”
로,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란 “3” 을 “5” 로 하고, 지방수의주사
보란 “8” 을 “7” 로 한다.

별표4의10 중 소계란 “31” 을 “32” 로, 1급 내지 9급 계란 “22” 를 “23” 으로
하고,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란을 삭제하고, 지방녹지주사란 및 지방
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전산주사보란 다음에 지방수의주사란 및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지방수의주사 1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별표6 중 기관별 계란 “79” 를 “80” 으로, 감사관 중 정원 내역란에 지방서기관
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법무통계담당관 중 정원 계란 “1” 을

“2” 로 하고, 내역란에 지방행정사무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무통계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1	자치입법 지원 및 소송수행
---------	--	-----------	-------------------

별표7 소방본부 소관 중 방호구조과를 대응구조구급과로 한다.

별표7 소방서 소관 소방행정과 분장사무란 제1호 중 “보안에 관한 사항” 을 “보안” 으로, 제2호 중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을 “수립” 으로, 제3호 중 “회의에 관한 사항” 을 “회의” 로, 제4호 중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을 “인사” 로, 제5호 중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을 “복무관리” 로, 제6호 중 “감찰에 관한 사항” 을 “감찰” 로, 제7호 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을 “교육훈련” 으로, 제8호 중 “당직,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을 “당직근무 배치 및 감독” 으로, 제9호 중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을 “비상근무” 로, 제10호 중 “상훈에 관한 사항” 을 “상훈” 으로, 제11호 중 “평정에 관한 사항” 을 “평정” 으로, 제12호 중 “징계에 관한 사항” 을 “징계” 로, 제13호 중 “계획에 관한 사항” 을 “계획” 으로, 제14호 중 “평가에 관한 사항” 을 “평가” 로, 제15호 중 “처리에 관한 사항” 을 “처리” 로, 제16호 중 “수행에 관한 사항” 을 “수행” 으로, 제17호 중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을 “공직윤리” 로, 제18호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을 “행정정보공개” 로, 제19호 중 “보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을 “후생복지” 로, 제20

호 중 “사무관리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기록물관리”로, 제21호 중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건강보험”으로, 제22호 중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책정”으로, 제23호 중 “소방활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건안전관리”로, 제24호, 제25호, 제26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으로, 제27호 중 “위촉에 관한 사항”을 “위촉”으로, 제28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으로, 제29호 중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립”으로, 제30호 중 “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석”으로, 제31호 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로, 제32호 중 “소방장비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방장비개발”로, 제33호 중 “물품구입·수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물품구입, 출납 및 수리”로, 제34호 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제35호 중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으로, 제36호 중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을 “유가증권”으로, 제37호 중 “급여에 관한 사항”을 “보수 및 수당 등의 지급”으로, 제38호 중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시설공사”로, 제39호 중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로 하고, 제40호 중 “소방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방행정업무”로 한다.

별표7 소방서 소관 중 방호예방과를 예방안전과로, 대응구조과를 대응구조구급과로 한다.

별표7 소방서 소관 예방안전과 분장사무란 제1호 중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예방소방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제4호 중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으로, 제6호 중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세입징수”로, 제7호 중 “홍보에 관한 사항”을 “홍보”로, 제8호 중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정·관리”로, 제9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으로, 제10호 중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직·운영”으로, 제11호 중 “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사”로, 제12호 중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소방특별조사”로, 제13호 중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로, 제14호 중 “특례에 관한 사항”을 “특례”로, 제15호 중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으로, 제16호 중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공사”로, 제17호 중 “소방용기계기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방용품 조치”로, 제18호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방안전관리”로, 제19호 중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으로, 제20호 중 “방염 등에 관한 사항”을 “방염”으로, 제21호 및 제22호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로, 제23호 중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손실보상”으로, 제24호 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로, 제25호 중 “방호·예방업무에 관한 사항”을 “예방업무”로 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7 소방서 소관 대응구조구급과 분장사무관 중 제1호, 제2호, 제3호부터 제26호까지를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30호까지로, 제2호 중 “현장활동에 관한 사항”을 “현장활동”으로, 제5호 중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을 “소방훈련”

으로, 제7호 중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리조사”로, 제8호 중 “단속에 관한 사항”을 “단속”으로, 제9호 중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을 “화재조사”로, 제10호 중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로, 제11호 중 “협조에 관한 사항”을 “협조”로, 제12호 중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장비관리”로, 제13호 중 “화재분석에 관한 사항”을 “화재분석”으로, 제14호 중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을 “자료조사”로, 제15호 중 “119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을 “119구조·구급”으로, 제16호 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설치·운영”으로, 제17호 중 “수난구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난구조활동”으로, 제18호 중 “긴급구조통제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으로, 제19호 중 “재난대비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난대비긴급구조훈련”으로, 제20호 중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으로, 제21호 중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제22호 중 “응원에 관한 사항”을 “응원”으로, 제23호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로, 제24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으로, 제25호 중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보안”으로, 제26호 및 제27호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으로, 제28호 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으로, 제29호 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제30호 중 “대응구조업무에 관한 사항”을 “대응구조구급업무”로 하고,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대응·구조·구급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화재위험경보 및 특별경계근무

4.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6.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이 규정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4조(정원관리 및 분장사무 조정 등) ① 본청 119종합상황실은 「팀제」로 운영하며, 팀제를 운영하지 않는 본청의 실·국·본부 및 의회사무처는 실장·국장·본부장·처장의 책임경영제로 운영한다.	제4조(정원관리 및 분장사무 조정 등) ① 본청의..... 운영하며,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개인별 사무분장) 본청·의회사무처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과장·팀장 및 담당관 등은 소속 공무원의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되게 사무를 분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직급·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별 사무분장)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담당관.....
[별표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총 계	1,291
소방직 계	140
지방소방경	17
지방소방위	20
지방소방장	36
지방소방사	30
1급 내지 9급 계	1,028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1
지방서기관	18
[별표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총 계	1,307
소방직 계	150
지방소방경	18
지방소방위	22
지방소방장	37
지방소방사	36
1급 내지 9급 계	1,034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2
지방서기관	17

현행	개정
지방행정사무관 117	 118
⋮	⋮
지방행정주사 148	 149
⋮	⋮
지방공업주사 10	 11
⋮	⋮
지방수의주사 2	 1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	⋮
지방공업주사보 9	 8
⋮	⋮
지방수의주사보 1	 2
⋮	⋮
지방시설주사보 46	 48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학예연구사 1	 2
⋮	⋮
[별표1의3] 감사관 정원표 소 계 37	[별표1의3] 감사관 정원표 38
⋮	⋮
1급 내지 9급 계 33	 34
⋮	⋮
⋮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1
지방서기관 1	⋮ 〈삭 제〉
⋮	⋮
지방행정주사보 5	 6
⋮	⋮

현	행	개	정
[별표1의6] 기획조정실 정원표		[별표1의6] 기획조정실 정원표	
소 계	99		100
1급 내지 9급 계	95		96
⋮		⋮	
지방행정사무관	16		17
⋮		⋮	
[별표1의9] 문화관광체육국 정원표		[별표1의9] 문화관광체육국 정원표	
⋮		⋮	
지방행정주사보	16		15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학예연구사	1
⋮		⋮	
[별표1의10] 농수산국 정원표		[별표1의10] 농수산국 정원표	
⋮		⋮	
지방수의주사	2		1
⋮		⋮	
지방수의주사보	1		2
⋮		⋮	
[별표1의11] 환경해양산림국 정원표		[별표1의11] 환경해양산림국 정원표	
⋮		⋮	
지방행정주사	9		8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1		2
⋮		⋮	

현	행	개	정
⋮		⋮	
	〈신 설〉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보	1
⋮		⋮	
[별표1의16] 소방본부 정원표		[별표1의16] 소방본부 정원표	
소 계	140		150
소방직 계	137		147
⋮		⋮	
지방소방경	17		18
지방소방위	19		21
지방소방장	34		35
⋮		⋮	
지방소방사	30		36
⋮		⋮	
[별표3]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3]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정원표	
총 계	3,155		3,244
⋮		⋮	
소방직 계	2,794		2,883
⋮		⋮	
지방소방정	16		17
지방소방령	40		47
지방소방경	127		147
지방소방위	211		219
지방소방장	401		417
지방소방교	743		755
지방소방사	1,256		1,281
⋮		⋮	

현행	개정
[별표3의5] 소방관서 지방공무원정원표 소 계 <u>2,800</u> 소방직 계 <u>2,794</u> 지방소방정 <u>16</u> 지방소방령 <u>40</u> 지방소방경 <u>127</u> 지방소방위 <u>211</u> 지방소방장 <u>401</u> 지방소방교 <u>743</u> 지방소방사 <u>1,256</u> :	[별표3의5] 소방관서 지방공무원정원표 소 계 <u>2,889</u> 소방직 계 <u>2,883</u> 지방소방정 <u>17</u> 지방소방령 <u>47</u> 지방소방경 <u>147</u> 지방소방위 <u>219</u> 지방소방장 <u>417</u> 지방소방교 <u>755</u> 지방소방사 <u>1,281</u> :
[별표3의5의2] 소방학교 정원표 소 계 <u>32</u> 소방직 계 <u>26</u> : 지방소방사 <u>1</u> :	[별표3의5의2] 소방학교 정원표 소 계 <u>33</u> 소방직 계 <u>27</u> : 지방소방사 <u>2</u> :
[별표3의5의3] 포항북부소방서 정원표 소 계 <u>201</u> 소방직 계 <u>201</u> : 지방소방경 <u>10</u> 지방소방위 <u>14</u> 지방소방장 <u>34</u> 지방소방교 <u>53</u> 지방소방사 <u>86</u>	[별표3의5의3] 포항북부소방서 정원표 소 계 <u>152</u> 소방직 계 <u>152</u> : 지방소방경 <u>9</u> 지방소방위 <u>12</u> 지방소방장 <u>25</u> 지방소방교 <u>38</u> 지방소방사 <u>64</u>

현 행	개 정
[별표3의5의4] 포항남부소방서 정원표 소 계 <u>204</u> 소방직 계 <u>204</u> : 지방소방위 <u>12</u> 지방소방장 <u>29</u> : 지방소방사 <u>98</u>	[별표3의5의4] 포항남부소방서 정원표 소 계 <u>205</u> 소방직 계 <u>205</u> : 지방소방위 <u>13</u> 지방소방장 <u>28</u> : 지방소방사 <u>99</u>
[별표3의5의5] 경주소방서 정원표 소 계 <u>248</u> 소방직 계 <u>248</u> : 지방소방위 <u>16</u> 지방소방장 <u>37</u> 지방소방교 <u>65</u> 지방소방사 <u>117</u>	[별표3의5의5] 경주소방서 정원표 소 계 <u>241</u> 소방직 계 <u>241</u> : 지방소방위 <u>17</u> 지방소방장 <u>36</u> 지방소방교 <u>67</u> 지방소방사 <u>108</u>
[별표3의5의6] 김천소방서 정원표 소 계 <u>151</u> 소방직 계 <u>151</u> : 지방소방령 <u>2</u> 지방소방경 <u>6</u> 지방소방위 <u>13</u> : 지방소방사 <u>70</u>	[별표3의5의6] 김천소방서 정원표 소 계 <u>146</u> 소방직 계 <u>146</u> : 지방소방령 <u>3</u> 지방소방경 <u>9</u> 지방소방위 <u>10</u> : 지방소방사 <u>64</u>

현행	개정
[별표3의5의7] 안동소방서 정원표	[별표3의5의7] 안동소방서 정원표
소 계 <u>237</u>	 <u>249</u>
소방직 계 <u>237</u>	 <u>249</u>
:	:
지방소방위 <u>15</u>	 <u>17</u>
지방소방장 <u>33</u>	 <u>35</u>
지방소방교 <u>71</u>	 <u>76</u>
지방소방사 <u>103</u>	 <u>106</u>
[별표3의5의8] 구미소방서 정원표	[별표3의5의8] 구미소방서 정원표
소 계 <u>218</u>	 <u>230</u>
소방직 계 <u>218</u>	 <u>230</u>
:	:
지방소방위 <u>15</u>	 <u>17</u>
지방소방장 <u>37</u>	 <u>39</u>
지방소방교 <u>61</u>	 <u>66</u>
지방소방사 <u>92</u>	 <u>95</u>
[별표3의5의9] 영주소방서 정원표	[별표3의5의9] 영주소방서 정원표
소 계 <u>191</u>	 <u>187</u>
소방직 계 <u>191</u>	 <u>187</u>
:	:
지방소방령 <u>2</u>	 <u>3</u>
지방소방경 <u>7</u>	 <u>10</u>
지방소방위 <u>14</u>	 <u>11</u>

현 행		개 정	
지방소방장	<u>25</u>		<u>24</u>
지방소방교	<u>47</u>		<u>49</u>
지방소방사	<u>95</u>		<u>89</u>
[별표3의5의10] 영천소방서 정원표		[별표3의5의10] 영천소방서 정원표	
소 계	<u>131</u>		<u>129</u>
소방직 계	<u>131</u>		<u>129</u>
⋮		⋮	
지방소방령	<u>2</u>		<u>3</u>
지방소방경	<u>6</u>		<u>9</u>
지방소방위	<u>11</u>		<u>8</u>
⋮		⋮	
지방소방사	<u>59</u>		<u>56</u>
[별표3의5의11] 상주소방서 정원표		[별표3의5의11] 상주소방서 정원표	
소 계	<u>141</u>		<u>147</u>
소방직 계	<u>141</u>		<u>147</u>
⋮		⋮	
지방소방령	<u>2</u>		<u>3</u>
지방소방경	<u>6</u>		<u>9</u>
지방소방위	<u>10</u>		<u>8</u>
지방소방장	<u>12</u>		<u>15</u>
⋮		⋮	
지방소방사	<u>73</u>		<u>74</u>
[별표3의5의12] 문경소방서 정원표		[별표3의5의12] 문경소방서 정원표	
소 계	<u>191</u>		<u>189</u>
소방직 계	<u>191</u>		<u>189</u>

현행	개정
⋮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 3 10 11 ⋮ 51 88
2 7 14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 52 90	

현행	개정
<u>〈신 설〉</u>	<u>[별표3의5의14의2] 영덕소방서 정원표</u> <u>소 계</u> 111 <u>소방직 계</u> 111 지방소방정 1 지방소방령 2 지방소방경 6 지방소방위 11 지방소방장 22 지방소방교 24 지방소방사 45
<u>[별표3의5의15] 고령소방서 정원표</u> <u>소 계</u> 89 <u>소방직 계</u> 89 : 지방소방위 8 : 지방소방교 24 지방소방사 34	<u>[별표3의5의15] 고령소방서 정원표</u> 91 91 : 9 : 21 38
<u>[별표3의5의16] 성주소방서 정원표</u> <u>소 계</u> 98 <u>소방직 계</u> 98 : 지방소방위 9	<u>[별표3의5의16] 성주소방서 정원표</u> 101 101 : 10

현행	개정
:	:
지방소방교 <u>29</u>	 <u>26</u>
지방소방사 <u>43</u>	 <u>48</u>
[별표3의5의17] 칠곡소방서 정원표	[별표3의5의17] 칠곡소방서 정원표
소 계 <u>147</u>	 <u>149</u>
소방직 계 <u>147</u>	 <u>149</u>
:	:
지방소방위 <u>12</u>	 <u>13</u>
지방소방장 <u>21</u>	 <u>20</u>
:	:
지방소방사 <u>66</u>	 <u>68</u>
[별표3의5의18] 울진소방서 정원표	[별표3의5의18] 울진소방서 정원표
소 계 <u>137</u>	 <u>139</u>
소방직 계 <u>137</u>	 <u>139</u>
:	:
지방소방위 <u>12</u>	 <u>13</u>
지방소방장 <u>22</u>	 <u>21</u>
지방소방교 <u>32</u>	 <u>30</u>
지방소방사 <u>62</u>	 <u>66</u>
[별표4] 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4] 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총 계 <u>424</u>	 <u>426</u>
:	:
1급 내지 9급 계 <u>276</u>	 <u>278</u>
:	:

현	행	개	정
지방수의주사	18	지방수의주사	19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	4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	6
지방수의주사보	28	지방수의주사보	27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별표4의3] 가축위생시험소 정원표 소 계	84	[별표4의3] 가축위생시험소 정원표 소 계	85
1급 내지 9급 계	69	1급 내지 9급 계	70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	4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	6
지방수의주사보	27	지방수의주사보	26
[별표4의3의2] 본소 정원표 소 계	36	[별표4의3의2] 본소 정원표 소 계	37
1급 내지 9급 계	30	1급 내지 9급 계	31

현행		개정	
⋮		⋮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	3	⋮	5
⋮		⋮	
지방수의주사보	8	⋮	7
⋮		⋮	
[별표4의10] 산림자원개발원 정원표 소 계	31	[별표4의10] 산림자원개발원 정원표 ⋮	32
⋮		⋮	
1급 내지 9급 계	22	⋮	23
⋮		⋮	
⋮	〈신 설〉	지방수의주사	1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삭 제〉	
⋮		⋮	
⋮	〈신 설〉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		⋮	
[별표6] 계약직공무원 정원표		[별표6] 계약직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정 원	기관별	정 원
계	79	계	80
⋮		⋮	
감사관	1 지방서기관 1	감사관	1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1
⋮		⋮	
법무통계 담당관	1 지방행정 주사 1	법무통계 담당관	2 지방행정 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1
⋮		⋮	
			자치입법 지원 및 소송수행 통계분석처리

현행		개정	
[별표7] 사무분장표 소방본부 소관		[별표7] 사무분장표 소방본부 소관	
팀 과	분 장 사 무	팀 과	분 장 사 무
방호구조과	1. - 68. (생략)	대응구조과	1. - 68. (현행과 같음)
소방서 소관		소방서 소관	
팀 과	분 장 사 무	팀 과	분 장 사 무
소방행정과	1. 관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보안	
	2. 총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수립	
	3. 소방연혁 및 의식, 회의에 관한 사항	3.회의	
	4.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인사	
	5.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	
	6. 감찰에 관한 사항	6. 감찰	
	7. 교양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교육훈련	
	8. 당직,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당직근무 배치 및 감독	
	9. 비상업무에 관한 사항	9. 비상업무	
	10. 상훈에 관한 사항	10. 상훈	
	11. 평정에 관한 사항	11. 평정	
	12. 징계에 관한 사항	12. 징계	
	13. 소방행정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13.계획	
	14. 소방서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14.평가	
	15. 진정·탄원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5.처리	
	16.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16.수행	
	17.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7. 공직윤리	
	18.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8.행정정보공개	
	19. 보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9. 후생복지	
	20. 사무관리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0. 행정업무의 운영 및 기록물관리	
	21. 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21.건강보험	
	22.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22.기준책정	
	23. 소방활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보건안전관리	
	24. 의무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24.운영	
	25.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25.운영	
	26. 소방행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운영	
	27. 명예소방관 위촉에 관한 사항	27.위촉	

현행		개정	
팀 과	분 장 사 무	팀 과	분 장 사 무
소방행정 과	28. 관사(비상대기용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28.운영
	2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9.수립
	30.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30.분석
	31.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1.유지관리
	32. 소방장비개발에 관한 사항		32. 소방장비개발
	33. 물품구입·수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		33. 물품구입, 출납 및 수리
	34. 소방공무원 복제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관리
	35.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5.결산
	36.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36.유가증권
	37. 급여에 관한 사항		37. 보수 및 수당 등의 지급
	38.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38. 시설공사
	39.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9. 공유재산관리
	40. 기타 소방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40.소방행정업무
방호예방 과	1.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예방안 전과	1. 예방소방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2. 화재위험경보 및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학생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
	5.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6. 세입징수
	7. 화재의 예방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홍보
	8.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지정·관리
	9.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운영
	10. 한국119소년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10.조직·운영
	11. 소방대상물 조사에 관한 사항		11.조사
	12.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12. 소방특별조사
	13. 건축허가 동의 등에 관한 사항		13.동의
	14.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특례
	15.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5.등록
	16.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시설공사

현행		개정	
팀 과	분 장 사 무	팀 과	분 장 사 무
방호예방과	17. 형식 미승인 등 소방용기계기구 조치에 관한 사항 18.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0.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항 21.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4.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5. 기타 방호·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예방안전과	17.소방용품 조치 18.소방안전관리 19.등록 20.방염 21.안전관리 22.안전관리 23. 손실보상 24.처리 25.예방업무
대응구조과	<신 설> 1.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 현장활동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2.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신 설>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 관리 및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5.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6. 화재조사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유관기관(경찰,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화재조사기자재 등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화재분석에 관한 사항 10.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11. 119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12.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수난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14.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대비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대응구조구급과	1. 대응·구조·구급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현장활동 3. 화재위험정보 및 특별정계근무 4.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5. 소방훈련 6.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7. 지리조사 8.단속 9. 화재조사 10.민원처리 11.협조 12.장비관리 13.화재분석 14.자료조사 15. 119구조·구급 16.설치·운영 17. 수난구조활동 18.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19. 재난대비긴급구조훈련

현행		개정	
팀과	분장사무	팀과	분장사무
대응구 조과	16.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0.교육	
	17.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21. 소방지원활동	
	18. 소방업무의 응원에 관한 사항	22.응원	
	19. 소방정보통신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관리운영	
	20. 소방 유·무선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24. 운영	
	21.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5. 정보통신보안	
	22.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6. 관리운영	
	23. 영상회의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7. 관리운영	
	24.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관리운영	
	25. 비상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29.관리	
	26. 기타 대응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30.대응구조구급업무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227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청도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편입
3.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054-778-38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13-232호

환 지 계 획 인 가 고 시

4대강사업 추진과 함께 저지대 농경지의 영농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마전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지구명 : 마전지구
2. 사업구역 :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지보리
3. 종전토지 : 소유자 132명, 면적 435,395.0㎡
4. 환 지 : 소유자 91명, 면적 434,561.1㎡
5. 환지청산금 : 331,132,700원
6. 환지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 준비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경상북도 고시 제2013-234호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위치·면적

- 명 칭 : 대가야 목책교 건설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회천)
- 면 적 : 2,455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고령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55

3. 사업의 목표·개요

- 목 표

- 보행자의 안전한 동선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보도교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 개 요 : 보도교 L=308.0m, B=4.0m(현수교 L=210.0m, 아치교 L=95.0m)

4. 사업시행기간 : 2010. 12. 23 ~ 2019. 12. 31

5.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6. 실시계획 도서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고령군 관광진흥과(☎054-95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가능

경상북도 고시 제2013-235호

환 지 계 획 인 가 고 시

침수피해가 잦은 저지대 농경지의 영농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신기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지구명 : 신기지구
2. 사업구역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신기리
3. 종전토지 : 소유자 206명, 면적 674,105.0㎡
4. 환 지 : 소유자 191명, 면적 673,402.6㎡
5. 환지청산금 : 492,418,720원
6. 환지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에 준비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경상북도 고시 제2013-236호

2013년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일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 명 : 2013년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변경내역 : 불임내역
3. 기타문의 : 경상북도 세정과(전화: 053-950-2552, E-mail: eyesea@korea.kr)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목록 현황

① 시설물(레저시설) : 1 건(신규 1)

(단위 : 천원)

연번	유원지명	시설물명	시가표준액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비고
1	경북 경주 경주월드	더블익스트림		808,000	누락

② 회원권(골프회원권) : 2건(삭제 1, 인하 1)

(단위 : 천원)

연번	시군명	골프장명	회원권구분	시가표준액 (변경 전)	시가표준액 (변경 후)	비고
1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CC	11차일반	115,000	-	삭제(중복)
2	경북 경산시	인터볼고	창립	245,000	235,000	인하

③ 차량(형식분류) : 22건(신규 20, 인상 1, 삭제 1)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제작회사	산지 구분	차명	형식	시가표준액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비고
1	승용	AUDI	외산	A8 4.2 Quattro LWB	4E	152,297	-	삭제 (중복)

연번	차종	제작회사	산지 구분	차명	형식	시가표준액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비고
2	승용	기아	국산	카렌스1.8	FC722A		13,453	신규
3	승용	기아	국산	카렌스1.8	FC723A		14,525	신규
4	승용	현대	국산	스타렉스	HA12-1		14,338	신규
5	승용	GM대우	국산	레조	UA75S		12,972	신규
6	승용	현대	국산	스타렉스	HA12-2		12,154	신규
7	승용	대우	국산	매그너스LPG	LA69S		12,967	신규
8	승용	기아	국산	카스타7인승	M3C-2MD		13,200	신규
9	승용	현대	국산	갤로퍼	HPB-2		14,710	신규
10	승용	기아	국산	카니발9인승	UP912A		13,727	신규
11	승용	기아	국산	카스타7인승	M3C-2AD		13,200	신규
12	승용	현대	국산	갤로퍼	HPB-4		13,710	신규
13	승용	대우	국산	매그너스	LA69Z		14,340	신규
14	승용	대우	국산	매그너스	LA69Z-1		14,628	신규
15	승용	삼성	국산	SM520	Q1S20-4A-0		16,673	신규
16	승용	기아	국산	카니발9인승	UP912B		16,454	신규
17	승용	기아	국산	카니발9인승LPG	UP933A LPG		14,809	신규
18	승용	현대	국산	트라제XG9인 LPG	FO-27L9-A 1		17,045	신규
19	승용	기아	국산	카니발9인승	MA913B	17,141	18,575	인상
20	승용	현대	국산	다이너스티3.0 LPG	LX-30SJ-A 1		19,758	신규
21	승용	현대	국산	다이너스티3.0 LPG	LX-TX30-A 1		19,366	신규
22	승용	쌍용	국산	무쏘7인승	FJ1-TAB-7		16,766	신규

④ 항공기 : 2건(신규 20)

(단위:백만원)

연번	물건명	제작회사	형식	정원 (명)	내용 년수	기준가격 (당초)	기준가격 (변경)	비고
1	경 량 항공기	RANS INCORP	S-9 CHAOS (HLC132)	1	5	-	20	신규
2	경 량 항공기	RANS INCORP	S9 SUPER CHAOS(HLC196)	1	5	-	20	신규

⑤ 표기수정 : 8건(적용요령 수정 1, 기준가격표 수정 7)

페이지	내 용		비 고
9	수정 전	3)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4의 사무실	오타자 수정
	수정 후	3)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5의 사무실	
16	수정 전	다. 2) 가산대상 (3)~(5)을 적용할 상가부분이라 함은...	오타자 수정
	수정 후	다. 2) 가산대상 (3)~(6)을 적용할 상가부분이라 함은...	

페이지	내 용							비 고	
413	수정 전	라. 회전익						오타자 수정	
		연번	제작회사	기종및형식	정원(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년수		기준가격
	44	SIKORSKY	S76-C++	13	5,307	14	10,400		
	수정 후	연번	제작회사	기종및형식	정원(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년수		기준가격
44		SIKORSKY	S76-C++	14	5,307	8	10,400		
488	수정 전	① 토관, 시멘트관, 흙관, 화학제품						오타자 수정	
		규격	단위	기준가격					
			토관	시멘트관	흙관	화학제품등			
	D 750m/m이하	m당	55	48	12	123			
수정 후	규격	단위	기준가격						
			토관	시멘트관	흙관	화학제품등			
D 750m/m이하	m당	55	48	120	123				
537	수정 전	승객용 엘리베이터 기준가격표 중 직류기어레스형(DC-GL) 의 속도 및 층별 구분 “300m/분 26층 기준” 을							오타자 수정
	수정 후	승객용 엘리베이터 기준가격표 중 직류기어레스형(DC-GL) 의 속도 및 층별 구분 “300m/분 25층 기준” 을							
538	수정 전	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오타자 수정	
		구분	교류형(AC) 2,500kg						
		20m/분	30m/분	45m/분	60m/분				
	1층 증감시	1,637	1,637	1,637	1,637				
수정 후	구분	교류형(AC) 2,500kg							
		20m/분	30m/분	45m/분	60m/분				
1층 증감시	1,637	1,637	1,637	1,643					

경상북도 고시 제2013-237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관리지역 추가세분 및 용도지역의 변경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60,714,886	-	660,714,886	100.0	
도시지역		14,585,598	-	14,585,598	2.2	
관 리 지 역	소 계	311,081,503	증) 7,252,435	318,333,938	48.2	
	보전관리지역	127,404,887	증) 7,036,105	134,440,992	20.4	
	생산관리지역	45,800,177	증) 2,509,118	48,309,295	7.3	
	계획관리지역	132,133,253	증) 3,450,088	135,583,341	20.5	
	미세분 관리지역	5,743,186	감) 5,742,876	310	-	
	농림지역	334,459,785	감) 7,252,435	327,207,350	49.5	
자연환경보전지역		588,000	-	588,000	0.1	

■ 행정구역별 지정내역

구분	합 계	면 적 (㎡)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계	318,333,938	24,657,158	26,488,261	28,487,620	11,643,838	57,001,872	22,683,111
보전 관리	134,440,992	7,808,024	16,781,619	12,597,091	3,063,348	34,144,937	14,259,947
생산 관리	48,309,295	843,030	2,887,441	9,204,740	7,525,015	7,418,169	1,903,979
계획 관리	135,583,341	16,006,104	6,819,201	6,685,479	1,055,475	15,438,766	6,519,185
관리 지역	310	-	-	310	-	-	-
구분	합 계	면 적 (㎡)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계	318,333,938	25,067,033	41,270,784	11,726,367	10,851,124	32,635,975	25,820,795
보전 관리	134,440,992	9,118,263	4,824,368	7,913,483	5,400,885	7,501,857	11,027,170
생산 관리	48,309,295	1,741,820	2,244,629	2,347,868	2,161,948	6,318,741	3,711,915
계획 관리	135,583,341	14,206,950	34,201,787	1,465,016	3,288,291	18,815,377	11,081,710
관리 지역	310	-	-	-	-	-	-

■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예천군 전 역	미세분 관리지역	소계	5,742,876	-	- 2009년 관리지역 세분시 미세분(산지이용구분선)된 지역과 2009년 재정비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용두휴게공원(A=27,290㎡)지역 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지침에 맞게 세분
			보전 관리지역	4,298,516	80	
			생산 관리지역	484,405	80	
			계획 관리지역	959,955	100	
		농림지역	소계	7,252,435	-	- 농업보호구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지침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 농업보호구역 해제 A=7,249,182㎡ (경상북도 고시 제2008-623호) ※ 고시면적은 7,493,044㎡였으나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감243,862㎡) · 보전산지 해제 A=3,253㎡ (산림청 고시 제2009-131호)
			보전 관리지역	2,933,072	80	
			생산 관리지역	2,211,485	80	
			계획 관리지역	2,107,878	100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95,483	100	- 토지적성평가 지침 개정 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생산 관리지역		186,772		

- 다 음 -

법 인 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 종 류	등록취소 일 자	등록취소 사 유
대성임업 (주)	경북2010-003 (2010.02.10)	김순득	경북 안동시 용상동 1604-7	숲가꾸기및 병해충방제	2013.05.29	산림기술 자자격증 도용법인 변경등록
(주) 나무사랑	경북2009-004 (2009.02.04.)	최점석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1-12(2층)	숲가꾸기및 병해충방제	2013.05.29	산림기술 자자격증 도용법인 변경등록
(주)엠제이 그린	경북2008-002 (2008.07.07.)	임미정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642	숲가꾸기및 병해충방제	2013.05.29	산림기술 자자격증 도용법인 변경등록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3-642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지도 제 20호 지방도 제929호	노선명	포항-영덕선 양북-구룡포선
공사의 종류	북부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20호) 영일만 자전거길 조성사업(929호)		
구 간	청하 용두리 ~ 이가리1.08km, 흥해 오도리0.12km, 흥해 칠포리1.28km 동해 발산리 ~ 호미곶면 대동배리2.36km (전체 4.84km)		
공사시행장소	상동		
착수예정일	2013년 7월 일	준공예정일	2014년 12월 31일
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가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포항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증대와 관광자원 개발			



측량업 등록 공고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 록 번 호	소 재 지	등 록 일
(주)세진토목 엔지니어링 (이현숙)	일반측량 (515-81-4670 1)	제04-002694호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3 (동진빌딩 3층)	2013.05.24



전기공사업등록업체 행정처분 공고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행정처분내용	
				처분명(사유)	취소일
부산-00706	(주)성운전기	김 성 태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로16번길 8	등록취소 (기술인력 미달)	'13.5.30



경상북도 공고 제2013-645호

전기공사업등록업체 행정처분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아 래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내용	
				처 분 명 (사유)	영업정지기 간
경북-00508	(주)한영기업	방극윤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139번길 38	영업정지1월 (기술인력미달)	' 13.05.30~ ' 13.06.29
경북-01504	(주)신태영전력	김정광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5길 23-4	영업정지1월 (기술인력미달)	' 13.05.30~ ' 13.06.29
경북-01371	(주)비엠전기	오경택	경북 안동시 태화중앙로58, 3층	영업정지1월 (기술인력미달)	' 13.05.30~ ' 13.06.29

경상북도공고 제2013-646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합병 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합병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 합병인가 신청내용

구 분	합 병 전 법 인		합 병 후 법 인	비고
등록번호	경북(전문2종)5-29호	경북(전문1종)5-19호	경북(전문1종)5-19호	
업 체 명	(주)선엔지니어링	(주)성문기술단	(주)성문기술단	
대 표 자	김 호 열	정 경 채	정 경 채	
주소(소재지)	경북 구미시 형곡동 196-1	경북 경주시 동천동 827	경북 경주시 동천동 827	
합병예정일	2013년 4월 29일(합병계약 : ' 13. 3.15)			

경상북도 공고 제2013-647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합병 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합병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 합병인가 신청내용

구 분	합 병 전 법 인		합 병 후 법 인	비고
등록번호	경북(종합)1-38호	경북(종합)1-26호	경북(종합)1-26호	
업 체 명	(주)선엔지니어링	(주)성문기술단	(주)성문기술단	
대 표 자	김 호 열	정 경 채	정 경 채	
주소(소재지)	경북 구미시 형곡동 196-1	경북 경주시 동천동 827	경북 경주시 동천동 827	
합병예정일	2013년 4월 29일(합병계약 : ' 13. 3.15)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경 상 북 도 지 사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설계업	경북5-70(전문1종)	(주)오이디	박영노	경북 김천시 평화동 229-12	'13.05. .

시 군

고 시

김천시 고시 제2013-893호

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우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김천시고시제2010-494호(2010.04.01)로 고시된 우리시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김 천 시 장

1. 위 치 :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조마면 신왕리 산업용지조성사업
- 명 칭 : 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우수지)사업

3. 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연장(m)	폭원(m)	면적(m ²)	비고
도로	중로3-조마1호선	552	12	6,624	당초
		558	12	7,254.8	변경
	소로3-조마1호선	45	4	180	당초
		7	4	27.1	변경
	소로3-조마2호선	321	4	1,300	당초
		277	4	1,134.6	변경
녹지	완충녹지1	-	-	449	당초
		-	-	476.4	변경
	완충녹지2	-	-	498	당초
		-	-	490.6	변경
	완충녹지3	-	-	275	당초
		-	-	294.7	변경
유수지	유수지	-	-	1,740	당초
		-	-	1,740.3	변경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 성 명 : (주)이화이앤씨 대표이사 김중호

5. 사업기간 : 2010. 4. 1 ~ 2013. 6.30

6.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시설별 면적조정 및 설계변경(포장, 배수공 등)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명세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등 : 붙임조서와 같음

8.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054-420-6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서

□ 편입토지조서(총괄)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당초	조마	신왕	1187	답	1,580	85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변경	조마	신왕	1187	답	1,580	85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설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2	당초	조마	신왕	답	3,693	479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변경	조마	신왕	1188	답	3,693	479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설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3	당초	조마	신왕	1257-126	천	4,252	122	국(건설 교통부)				
	변경	조마	신왕	1257-239	잡	972	100	국(기획 재정부)				
4	당초	조마	신왕	1316	도	149	25	국 (건설부)				
	변경	조마	신왕	1316	잡	28	28	국 (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5	당초	조마	신왕	산98	임	86,848	5,592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신왕	산98	임	86,848	6,029.8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설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6	당초	조마	대방	378-1 답	1,214	54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대방	378-6 답	63	63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설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7	당초	조마	대방	381 전	2,023	1,234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대방	381 전	2,023	1,674.7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설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8	조	대	381-1	제	890	33	김천시					
9	당	조	대	전	554	16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	조	대	전	554	15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상권 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경북 울진군 울진읍 내리 1-4	공진건설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10	당초	조마	대방	2121-8	답	2,244	1,223	국 (재무부)					
	변경	조마	대방	2121-192	답	1,223	1,219.4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11		조마	대방	2121-1	천	20,429	205	국 (건설부)					
12	당초	조마	대방	2121-70	천	2,833	257	국 (건설부)					
	변경	조마	대방	2121-188	잡	286	280.6	국(기획 재정부)					
13		조마	대방	2121-72	제	1,236	111	국 (건설부)					
14	당초	조마	대방	2121-73	천	3,844	1,083	국 (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변경	조마	대방	2121-190	잡	1,856	685.3	국(기획재정부)					
15		조마	대방	2121-74	제	3,248	42	국 (건설부)					
16		조마	대방	2121-84	제	424	116	국 (국세청)					
17	당초	조마	대방	산2	묘	16,264	43	김천시					
	변경	조마	대방	산2	묘	16,264	55.1	김천시					
18	당초	조마	대방	산3	임	40,066	346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변경	조마	대방	산3	임	40,066	196.3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설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계	당초					11,066						
	변경					11,418.5						

□ 시설별 편입토지조서

1. 도로

① 중로3-조마1호선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당초	조마	신왕	1187	답	1,580	85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 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신왕	1187	답	1,580	85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지상권 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설주식 회사	근저당 권설정	
2	당초	조마	신왕	1188	답	3,693	479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 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신왕	1188	답	3,693	479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지상권 설정	

번호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경북 울진군 울진읍 내리 1-4	공진건설주식 회사	근저당 권설정	
3	당초	조마	신왕 -126	천		4,252	100	국(건설 교통부)					
	변경	조마	신왕 -239	잡		972	100	국(기획 재정부)					
4	당초	조마	신왕 1316	도		149	25	국 (건설부)					
	변경	조마	신왕 1316	잡		28	28	국 (건설부)					
5	당초	조마	신왕 산98	임		86,848	4,458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변경	조마	신왕	산98	임	86,848	5,064.7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 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 설주식 회사	근저당 권설정	
6	당초	조마	대방	378-1	답	1,214	14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변경	조마	대방	378-6	답	63	23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 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내리 1-4	공진건 설주식 회사	근저당 권설정	
7	당초	조마	대방	전	2,023	210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 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대방	381 전	2,023	210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 설주식 회사	근저당 권설정	
8	조마	대방	381-1	제	890	33	김천시					
9	당초	조마	대방	2121-8	답	2,244	516	국 (재무부)				
	변경	조마	대방	2121-192	답	1,223	516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10	조 마	대 방	2121 -1	천	20,429	205	국 (건설부)					
11	당 초	조 마	대 방	2121 -70	천	2,833	57	국 (건설부)				
	변 경	조 마	대 방	2121 -188	잡	286	국(기획 재정부)					
12	조 마	대 방	2121 -72	제	1,236	111	국 (건설부)					
13	당 초	조 마	대 방	2121 -73	천	3,844	130	국 (건설부)				
	변 경	조 마	대 방	2121 -190	잡	1,856	국(기획 재정부)					
14	조 마	대 방	2121 -74	제	3,248	42	국 (건설부)					
15	조 마	대 방	2121 -84	제	424	116	국 (국세청)					
16	당 초	조 마	대 방	산2	묘	16,264	43	김천시				
	변 경	조 마	대 방	산2	묘	16,264	55.1	김천시				
계	당 초					6,624						
	변 경					7,254.8						

② 소로3-조마1호선

번호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당초	조마	신왕	산98	임	86,848	180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신왕	산98	임	86,848	27.1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 설주식 회사	근저당 권설정	
계	당초						180					
	변경						27.1					

③ 소로3-조마2호선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당초	조마	신왕	산98	임	86,848	954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신왕	산98	임	86,848	938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 설주식 회사	근저당 권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2	당초	조마	대방	산3	임	40,066	346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대방	산3	임	40,066	196.6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 사대구 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 설주식 회사	근저당 권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 는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당초					1,300						
	변경					1,134.6						

2. 녹지

① 완충녹지1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당초	조마	대방	378-1	답	1,214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변경	조	대	378-6	답	63	40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 권설정	
	마	방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상권 설정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설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2	당	조	2121-8	답	2,244	379	국 (재무부)					
	변경	조	2121-192	잡	1,223	406.4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3	당	조	2121-70	천	2,833	30	국 (건설부)					
	변경	조	2121-188	잡	286	30	국(기획 재정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당초					449						
	변경					476.4						

② 완충녹지2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당초	조마	대방 2121-8	답	2,244	328	국 (재무부)					
	변경	조마	대방 2121-192	잡	1,223	297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2	당초	조마	대방 2121-70	천	2,833	170	국 (건설부)					
	변경	조마	대방 2121-188	잡	286	193.6	국(기획 재정부)					
계	당초					498						
	변경					490.6						

③ 완충녹지3

번호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당초	조마	신왕	1257-126	천	4,252	22	국(건설교통부)					
	변경	조마	신왕	1257-239	잡	972	0	국(기획재정부)					
2	당초	조마	대방	381	전	2,023	5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대방	381	전	2,023	31.7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상권 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설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3	당초	조마	대방	2121-73	천	3,844	248	국 (건설부)					
	변경	조마	대방	2121-190	잡	1,856	263	국(기획재정부)					
계	당초						275						
	변경						294.7						

3. 유수지

① 유수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당초	조마	대방	381	전	2,023	1,019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대방	381	전	2,023	1,433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 권설정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상권 설정	
2	당초	조마	대방	382	전	554	16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	공진건설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10 현대아파트 2동 607호	조영수	근저당 권설정	
	변경	조마	대방	382	전	554	15	대구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주)이 화이앤 씨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2-2	조마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3	당초	조마	대방	2121-73	천	3,844	705	국 (건설부)					
	변경	조마	대방	2121-190	잡	1,856	292.3	국(기획재정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당초						1,740						
	변경						1,740.3						

구미시 고시 제2013-68호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중2-136, 중2-1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중2-136,중2-13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봉곡동 16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명 칭 : 구미도시계획도로(중2-136호선, 중2-13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중2-136호선 : B=15m, L=34m ○ 중2-137호선 : B=15m, L=27m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구미시 원평동 164-7번지 ○ (주)마이다스디앤지 대표 강호문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5. 12 .31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아래와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토지 대장상 면적(㎡)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주 소	성 명	
합계				6,849.5	937			
1	봉곡	169-1	대	224.9	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2	"	169-12	대	211.5	93	"	대한토지신탁(주)	
3	"	575	도	6233.1	586		구미시	
4	"	171-7	대	180	1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구미시 고시 제2013-71호

구미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금전동 8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미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 구미 에코타운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면적 : 2단계 35,309㎡ ○ 사업규모			
	구분	매립면적 (㎡)	매립용량 (㎥)	매립대상 폐기물
	계	122,698	3,217,700	
	1단계 (기존)	50,800	1,058,000	사업장 일반폐기물
	2단계 (금회)	35,309	746,000	사업장 일반폐기물
	3단계 (장래)	36,589	1,413,700	사업장 일반폐기물
개방형준호기성 위생매립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구미시 금전동 822번지 ○ 당초: (주)티와이이엔이 대표 김종일 - 변경: (주)티에스케이이엔이 대표 유진하
5.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4. 08. 01.
6. 사용또는 수용할 토 지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번호	토지소재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시
	동명	지 번				주 소	성 명	
계				99,700.5	35,309			
1	금전	구미 금전동 832	잡	99,700.5	35,309	구미시 금전동 832번지	주식회사 하나다울신탁	-



경산시 고시 제2013-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경 산 시 장

1. 사업명칭 : 경산 코아루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한국토지신탁 김용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481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분양주택	○ 대 지 면 적 : 21,593.3m² ○ 건축연면적 : 55,321.2332m² ○ 건 설 규 모 ·18 ~ 20층, 5동, 4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8,808,904천원	

2. 사업주체 성명 : 미진이엔시(주) 대표이사 김종탁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198번지

3. 사업내용

가. 위 치 :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536-1번지의 9필지

나. 대지면적 : 8,838m²

다. 건축면적 : 2,178.2696m²

라. 건설규모 : 15층, 201세대(2동) 외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1996. 8 ~ 2015. 6. 30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제88조(실시계획의작성 및 인가등)

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다. 도로법 제40조(도로점용허가)

라.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설치등)

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6.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계획승인	1996. 7. 12	1996. 7. 12
착공일자	2008. 7	2013. 6.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주체		미진이엔시(주) 대표이사 김종탁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98	미진이엔시(주) 대표이사 김종탁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98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인우 이현재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457-1	건축사사무소 인우 이현재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271-11
시공자		미진건설(주) 대표 신명옥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98	미진건설(주) 대표 김종탁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98
건 축 현 황	대지위치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536-1 외8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536-1 외9
	대지면적	8,845㎡	8,838㎡
	건축면적	2,153.2885㎡	2,178.2696㎡
	연면적	24,674.367㎡	26,326.5183㎡
	주택규모	4동 195세대 59.97㎡ 27세대 75.30㎡ 60세대 84.86㎡ 108세대	2동 201세대 84.9848㎡ 52세대 84.9782㎡ 59세대 76.0268㎡ 60세대 76.9642㎡ 15세대 78.9414㎡ 15세대
	층 수	11층~15층	11층~15층
	사업기간	1996년8월 ~ 2010년6월	1996년8월 ~ 2015년6월
	사업비	17,121,936천원	37,277,000천원
부대시설		전용상수도 개별가스난방 주차장-총160대(하113/상47) 어린이놀이터 - 462㎡ 노 인 정 - 64㎡ 관리사무실 - 75.48㎡ 조경시설 - 2,433.14㎡ 생활편의시설 - 457.956㎡ 비상급수시설 - 390톤	상수도 개별가스난방 주차장-총207대(하140/상67) 어린이놀이터 - 430.29㎡ 복리시설-411.66㎡ 조경시설 - 2,367.22㎡ 비상급수시설 - 270톤

7. 관계서류는 의성군청 민원과(☎830-6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청송군 고시 제2013-29호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청 송 군 수

1. 하천의 명칭 : 보현천(지방하천)
2. 점 용 자 :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건설단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409 외 3필지

나. 면 적 : 영구점용 61.4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점용목적 : 경보국 설치

5. 점용기간 : 영구점용

시 군

고

의성군 공고 제2013-385호

의성 군관리계획(문화시설)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의성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성군수(건설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30일

의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북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150번지 일원

2. 사업의 목적

- 전국 최대 규모의 왜가리 서식지와 전국 유일의 왜가리 축제를 활용하여 왜가리 생태공원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의성군 명품 관광브랜드로 개발, 관광객을 적극 유치코자 함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의성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 명 칭 : 왜가리 전통생태마을조성(2차)

4. 사업의 규모

- 결정면적 : 2,40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계						2,408			
1	신평	중율	351-1	답	1,600	473		의성군	
2			351-2	답	1,650	406		의성군	
3			351-3	답	1,330	379		의성군	
4			144-2	답	35	35		의성군	
5			365-2	구	1,880	100		의성군	
6			150	학	8,348	1,015		의성군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의성군수
- 주 소 :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5.12.31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칠곡군수(체육시설사업소) 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호국로 203(아곡리 670-5)
점용 면적	237m ²
점용 위치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787-1번지 외 1필지
점용 목적	석적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
공사 개요	그늘막 1개소, 야외무대(이동식) 1개소, 관람석 1식
점용 기간	2013년 05월 27일부터 2018년 05월 26일까지



" PRIDE GyeongBuk "

우리모두의 자랑 경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곳 **People**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앞서 열어가는 곳 **Rising**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선도 **Innovation**
도민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는 곳 **Dream**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경북 **Environment**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